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별정우체국 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0268	장중태의원	2025. 4. 30.	상 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8.26.)
	2211713	주호영의원	2025. 7. 24.	상 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8.26.)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6항 신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27조(급여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u><신 설></u>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 ----- ----- <u>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u>

<u><신 설></u>	<u>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u> <u>채납처분을 하는 경우</u>
<u><신 설></u>	<u>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u> <u>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u> <u>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u> <u>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u> <u>대해 압류하는 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